

보복금지

- A.
- B.
- C.
- D.
- E.
- F.



3/20/14

A. 요약

UTC 윤리규정을 실제로 위반했거나 또는 위반할 가능성을 신고하거나 이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임직원 또는 제 3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금지됩니다. 이 정책의 위반자는 최고 해고 또는 회사와의 사업 관계 해지 등을 포함하는 징계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B. 적용성

이 정책은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그 자회사, 사업부 및 전세계 UTC 와 그 직원이 통제하는 기타 사업체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회사에 부당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직원, 신고를 한 직원 또는 기타사업체 직원 등에게 제 3자(기업 및 개인)가 보복을 하는 경우에도 연장 적용됩니다.

C. 정책

1. UTC의 윤리 규정에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윤리 규정, 규정의 실행 부록 및 정책,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대한 실제 위반 또는 위반 의심 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당 신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는 한 정직하게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UTC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와 유사하게 UTC와 관련된 부당행위를 회사에 신고하여 줄것을 기대합니다. “정직한 신고”란 부당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정직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 및 제 3자는 [음부즈만/DIALOG](#)와 같은 다양한 신고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UTC는 제보의 입증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부당 행위 또는 의심이 가는 부당 행위를 정직하게 보고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명백하거나 미묘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복”은 정직한 신고나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이나 제 3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복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들은 제 1 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부당행위를 신고하도록 장려합니다.
3. UTC는 제보된 보복을 적극 조사하며, 회사 측에 의해 보복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이나 제 3자는 최고 해고 또는 회사와 해당 제 3자의 사업 관계 해지 등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4. UTC는 마땅히 보복행위로 인지될 수도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알려진 신고자를 확인함으로써 신고자를 추가로 보호합니다.
5. 이 정책은 직원이나 제 3자가 부당행위에 관여한데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B. 절차

없음.

C. 참고

□□ □□□

보복금지 핸드북

D. 검토

이 정책은 2년마다 한 번씩 검토합니다.

(□□ □□□-2013 □ 1 □)